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38호
------	--------

제출년월일 : 1999. 5.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현재 운용중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업무추진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코져 함.

2. 주요골자

- 지역협력과 사무 삭제 (안 제2조)
 - 공연신고
- 환경녹지과 일부사무 삭제 (안 제2조)
 -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허가
- 도시과 일부사무 삭제 (안 제2조)
 - 주택상환금징수
- 건설과 일부사무 신설 (안 제2조)
 - 소하천 점용등에 관한 사무중 일부사무

3. 관련근거

-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서('98. 11. 17)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4. 본 문 : 붙임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권한위임사항”중 “지역협력과”란 및 “환경녹지과”란 “제6호”, “도시과”란 “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건설과”란 “제1호”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비 고
건설과	2. 소하천 점용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사용 허가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 관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소 관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지역 협력과	공연신고	공연법 제14조 제1항	(삭 제)	(삭 제)	(삭 제)
환경 녹지과	6.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허가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	-----	(삭 제)	(삭 제)
건설과	1. (생 략)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생 략)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	(현행과 같음) 2. 소하천 점용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사용허가 나.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	(현행과 같음)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22조
도시과	1. 주택상환금 징수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제14조	-----	(삭 제)	(삭 제)